

소 장

원 고 별지1목록 기재와 같음
피 고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 외 11명

소송물가액	금 50,000,100원	
첨부할 인지액	230,000원	
첨부한 인지액	1,000원	
송 달 료	91,800원	
비 고		

소 장

원 고 별지1목록 기재와 같음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한결**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생명빌딩 9층, 16층
담당변호사 김 성 진
전화 (02)3487-3000, 팩스 (02)3487-3811

피 고 1.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
(LSF-KEB Holdings SCA)
9 블루바르트 드 라 플레인, 1050 브뤼셀, 벨기에
(9 Boulevard de la Plaine, 1050 Brussels, Belgium)
대표이사 Lone Star Capital Management, SPRL의
대표이사 마이클 디 톰슨(Michael D. Thomson)

2.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포 엘티디
(Lone Star Management Co. IV, Ltd.)
717 엔 하우드 스트리트, 스위트 2200, 달라스, 텍사스 75201, 미국
(717 N. Harwood Street, Suite 2200, Dallas, Texas 75201, U.S.A.)
대표이사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

3.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
(Lone Star Partners IV, L.P.)
워싱턴 몰 1 플로어, 스위트 104, 7 레이드 스트리트, 해밀
턴 에이치엠 11, 버뮤다
(Washington Mall 1st Floor, Suite 104, 7 Reid Street, Hamilton HM
11, Bermuda)
업무집행조합원 Lone Star Management Co. IV, Ltd.
대표이사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

4. 론스타 펀드 포(유에스) 엘피

(Lone Star Fund IV(U.S.), L.P.)

717 엔 하우드 스트리트, 스위트 2200, 달라스, 텍사스 75201, 미국

(717 N. Harwood Street, Suite 2200, Dallas, Texas 75201, U.S.A.)

업무집행조합원 Lone Star Partners IV, L.P.의 업무집행조합원 Lone Star Management Co. IV, Ltd.

대표이사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

5. 래리 에이 클레인(Larry A. Klane)

3018 오 스트리트 엔 더블유, 워싱턴 디씨 20007, 미국

(3018 O Street, N.W. Washington, D.C. 20007, U.S.A)

6. 마이클 디 톰슨(Michael D. Thomson)

717 엔 하우드 스트리트, 스위트 2200, 달라스, 텍사스 75201, 미국

(717 N. Harwood Street, Suite 2200, Dallas, Texas 75201, U.S.A.)

7. 엘리스 쇼트(Ellis Short)

더 선더랜드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 선더랜드 에스알51에스유 영국

(The Sunderland Stadium of Light Sunderland SR5 1SU, GB)

8. 유회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320 린든그로브 102동 404호

송달장소 서울시 금천우체국 사서함 165호 (154-600)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중)

9. 래리 에스 오웬(Larry S. Owen)

3130 알파인 로드 스위트 288-605 포트올라 밸리 캘리포니아 94028, 미국

(3130 Alpine Road Suite 288-605 Portola Valley CA 94028,

U.S.A.)

10.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

50 웰벡 스트리트 런던, 영국 더블유1엠 7에이치이
(50 Welbeck Street London, United Kingdom W1M 7HE)

11. 리차드 에프 웨커(Richard F. Wacker)

1225 17 스트리트, 스위트 300, 덴버, 씨오 80202, 미국
(1225 17th Street, Suite 300, Denver, CO 80202, U.S.A.)

12. 스티븐 리(Steven Lee)

600 엔 펄 스트리트, 스위트 1500, 달라스, 텍사스 75201,
미국
(600 N. Pearl Street, Suite 1500, Dallas, Texas 75201, U.S.A.)

손해배상(기) 청구 등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에게 금 3,448,062,500,000 원 및 이 중 2,123,125,000,000 원에 대하여 2012. 2. 9.부터, 268,750,000,000 원에 대하여 2007. 3. 29. 부터, 188,125,000,000 원에 대하여 2008. 3. 28. 부터, 33,593,750,000 원에 대하여 2009. 3. 31.부터, 137,062,500,000 원에 대하여 2010. 3. 30.부터, 26,875,000,000 원에 대하여 2010. 8. 4.부터, 36,281,250,000 원에 대하여 2010. 11. 9.부터, 228,437,500,000 원에 대하여 2011. 3. 31. 부터, 405,812,500,000 원에 대하여 2011. 7.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은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소외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합니다)가 발행한 주식 중 84,080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0.013%)를, 외환은행에 대하여 소제기 요구를 하기 6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여(갑 제1호증 실질주주증명서), 상법 제403조 및 은행법 제23조의5 제1항에 의해 0.0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가진 소수주주입니다. 원고들은 2012. 6. 20. 외환은행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소제기 청구를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소제기청구서).

나. 소외 외환은행에 대하여

소외 외환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외국환 업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한국외환은행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업무 등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주식회사로서 2012. 7. 20. 현재 자본금은 3,244,534,000,000원이고, 발행 주식의 총수는 644,906,826주입니다(갑 제3호증 외환은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피고들에 대하여

(1) 피고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에 대하여

피고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LSF-KEB Holdings SCA, 이하 '엘에스에프'라 합니다)는 2003년 8월 체결하고 2003년 10월 종결한 다음과 같은 계약을 통해 외환은행 주식의 51.00%를 취득했던 자입니다.

피고 론스타 펀드 포(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V(U.S.), L.P.)는 소외 코메르츠뱅크 및 소외 한국수출입은행과 2003. 8. 27.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외환은행의 주식 57,101,715주를 주당 5,4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거래실행일 후 3년 이내에 90,898,285주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취득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주식매매계약서(Share Purchase Agreement), 갑 제4호증의2 주식매매계약서 발췌번역본). 피고 론스타 펀드 포(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V(U.S.), L.P.)는 소외 외환은행과 같은 날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외환은행의 신주 268,750,000주를 주당 4,000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주식인수계약서(Share Subscription Agreement), 갑 제5호증의2 주식인수계약서 발췌번역본). 한편 피고 론스타 펀드 포(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V(U.S.), L.P.)는 소외 코메르츠뱅크 및 소외 한국수출입은행과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상대방의 의결권행사를 일정하게 제약하는 약정을 맺어 두었습니다(갑 제6호증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 갑 제6호증의2 주주간계약서 발췌번역본).

피고 론스타 펀드 포(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V(U.S.), L.P.)는 피고 엘에스에프와 2003. 9. 5.자로 체결된 '주식매수계약 및 주식인수계약에 관한 양수 및 인수계약'에 따라, 피고 론스타 펀드 포(유

에스) 엘피(Lone Star Fund IV(U.S.), L.P.)가 소외 코메르츠뱅크 및 소외 한국수출입은행과의 2003. 8. 27.자로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상 권리와 의무 일체 및 소외 외환은행과의 같은 날 체결된 주식인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피고 엘에스에프에게 양도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인수계약의 양수도에 관한 계약(Agreement Regarding Assignment And Assumption of Share Purchase Agreement And Share Subscription Agreement), 갑 제7호증의 2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인수계약의 양수도에 관한 계약 발췌번역본).

이로써 피고 엘에스에프는 2003. 9. 5.자 위 계약이 2003. 10. 31. 종결됨에 따라 소외 외환은행 주식의 51.00%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피고 엘에스에프는 그 후 소외 외환은행 주식의 추가취득 및 일부블록 세일에 의해 보유주식수를 변동시켜 소외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주식을 매각하던 2012. 2. 9. 당시에는 외환은행주식의 51.02%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 피고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포 엘티디(Lone Star Management Co. IV. Ltd.), 피고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Lone Star Partners IV L.P.), 피고 론스타 펀드 포(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V(U.S.), L.P.), 피고 존 그레이켄에 대하여

(가) 피고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Lone Star Partners IV L.P.)가 자신을 본인으로 기재하여 금융위원회에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2003. 9. 4. 피고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Lone Star Partners IV L.P.)와 피고 론스타 펀드 포(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V(U.S.), L.P.), 피고 엘에스에프는 금융감독위원회에 2003. 9. 2.

자로 작성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갑 제8호증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서 참조.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합니다.). 이 신청서의 동일인 현황 목록에서는 신청자 본인은 피고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론스타 펀드 포(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V(U.S.), L.P.)와 피고 엘에스에프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서

2003. 9. 2.

수 신 금융감독위원회
참 조 (은행감독국) 금융감독원장
제 목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

은행법 제 15 조 제 3 항에 따라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고자 은행업감독규정 제 14 조 제 1 항에 의거 불입과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붙 임 :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 내용 1부. 끝.

甲 第 15 號 證

신 청 인

대 리 인

Lone Star Partners IV, L.P.
Lone Star Fund IV (U.S.), L.P.
LSF-KEB Holdings, SCA

변호사 정 계 성
변호사 박 준
변호사 김 도 영

서울시 중로구 내자동 223
(전화 3703-1114)

2003. 9. 3

039873

인	지	시	간	2003. 9. 4	지	시	간	2003. 9. 4
인	지	시	간	2003. 9. 4	지	시	간	2003. 9. 4
인	지	시	간	2003. 9. 4	지	시	간	2003. 9. 4
인	지	시	간	2003. 9. 4	지	시	간	2003. 9. 4
인	지	시	간	2003. 9. 4	지	시	간	2003. 9. 4
인	지	시	간	2003. 9. 4	지	시	간	2003. 9. 4
인	지	시	간	2003. 9. 4	지	시	간	2003. 9. 4
인	지	시	간	2003. 9. 4	지	시	간	2003. 9. 4
인	지	시	간	2003. 9. 4	지	시	간	2003. 9. 4
인	지	시	간	2003. 9. 4	지	시	간	2003. 9. 4

<갑 제8호증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서 표지>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 내용

1. 신청인 현황

상 호	Lone Star Partners IV, L.P.	대표이사	업무집행조합원(general partner)인 Lone Star Management Co. IV, Ltd.
업 종	투자업	설립연월일	2001년 4월 30일
본점소재지	Washington Mall 1 st Floor, Suite 104, 7 Reid Street, Hamilton HM 11, Bermuda		
최대주주명 (지분율)	업무집행조합원(general partner)인 Lone Star Management Co. IV, Ltd.		
주요주주명 (지분율)	업무집행조합원(general partner)인 Lone Star Management Co. IV, Ltd. 및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s)인 다른 투자자들 (지분율 : 유한책임조합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자 본 금 (백만원)	37,567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유한책임조합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상 호	Lone Star Fund IV (U.S.), L.P.	대표이사	업무집행조합원(general partner)인 Lone Star Partners IV, L.P.
업 종	투자업	설립연월일	2001년 5월 1일
본점소재지	717 N. Harwood Street, Suite 2200, Dallas, Texas 75201, U.S.A.		
최대주주명 (지분율)	업무집행조합원(general partner)인 Lone Star Partners IV, L.P.		
주요주주명 (지분율)	업무집행조합원(general partner)인 Lone Star Partners IV, L.P. 및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s)인 다른 투자자들 (지분율 : 유한책임조합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자 본 금 (백만원)	723,143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유한책임조합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상 호	LSF-KEB Holdings, SCA	대표이사	Lone Star Capital Management, SPRL 의 대표이사 마이클 디. 롬슨
업 종	투자업	설립연월일	2003 년 8 월 21 일
본점소재지	9 Boulevard de la Plaine 1050 Brussels, Belgium		
최대주주명 (지분율)	LSF-KEB Capital Investment Sarl (99.9%)		
주요주주명 (지분율)	LSF-KEB Capital Investment Sarl (99.9%) Lone Star Capital Management SPRL (0.1%)		
자 본 금 (백만원)	79.6 백만원* (Euro 62,000)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1,000 주

13,476,920원

* 2003 년 8 월 29 일 기준환율인 1 Euro = 1284.56 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임

<갑 제8호증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서 2면>

2. 동일인 현황

	법인명	관 계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비 고 (업종코드)
본 인	Lone Star Partners IV, L.P.	본인	해당사항 없음	기타 투자기관	65939
특수관계인	Lone Star Fund IV (U.S.), L.P.	3 호	해당사항 없음	기타 투자기관	65939
	Lone Star Fund IV (Bermuda), L.P.	3 호	해당사항 없음	기타 투자기관	65939
	KEB Investors, L.P.	3 호	해당사항 없음	기타 투자기관	65939
	LSF4 Global Management, Ltd.	5 호	해당사항 없음	기타 투자기관	65939
	Lone Star Global Holdings, Ltd.	5 호	해당사항 없음	기타 투자기관	65939
	KEB Holdings, L.P.	8 호	해당사항 없음	기타 투자기관	65939
	Lone Star Capital Investments S.ar.L.	8 호	해당사항 없음	기타 투자기관	65939
	LSF-KEB Capital Investment, S.ar.L.	8 호	해당사항 없음	기타 투자기관	65939
	Lone Star Capital Management, SPRL	8 호	해당사항 없음	기타 투자기관	65939
	LSF-KEB Holdings, SCA	8 호	해당사항 없음	기타 투자기관	65939
	엘에스에프포 서울 원 유동화전문유한회사	8 호	220-86-52125	기타 투자기관	65939
	엘에스에프포 서울 부 유동화전문유한회사	8 호	220-86-52111	기타 투자기관	65939
	엘에스에프포 서울 쓰리 유동화전문유한회사	8 호	220-86-52106	기타 투자기관	65939

<갑 제8호증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서 3면>

제우스 유동화전문유한회사	8 호	220-86-61212	그외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	67199
테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8 호	220-86-62701	그외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	67199
아폴로유동화전문유한회사	8 호	220-86-64859	그외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	67199
아레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	8 호	220-86-66731	그외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	67199
극동건설 주식회사	8 호	201-81-45083	도로건설업	45121
스타리스 주식회사	8 호	104-81-28838	금융리스업	65923
극동요업 주식회사	8 호	137-81-02196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232
파천산업개발 주식회사	8 호	201-81-45098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70212
2279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	8 호	110111-2562802 (*)	채권추심 신용정보업	75993

* 법인등록번호임

<갑 제8호증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서 4면>

3. 동일인증 회사인 자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업종	비금융회사 해당여부	자산총액	자본총액	계무건전성 비율
Lone Star Partners IV, L.P.	기타 투자기관	X	39,701	37,567	해당사항 없음
Lone Star Fund IV (U.S.), L.P.	기타 투자기관	X	1,695,178	723,143	해당사항 없음
Lone Star Fund IV (Bermuda), L.P.	기타 투자기관	X	1,091,259	468,412	해당사항 없음
KEB Investors, L.P.	기타 투자기관	X	14	14	해당사항 없음
LSF4 Global Management, Ltd.	기타 투자기관	X	14	14	해당사항 없음
Lone Star Global Holdings, Ltd.	기타 투자기관	X	227,508	202,563	해당사항 없음
KEB Holdings, L.P.	기타 투자기관	X	14	14	해당사항 없음
Lone Star Capital Investments S.ar.L.	기타 투자기관	X	106,509	83,216	해당사항 없음
LSF-KEB Capital Investment, S.ar.L.	기타 투자기관	X	161	161	해당사항 없음
Lone Star Capital Management, SPRL	기타 투자기관	X	111	61	해당사항 없음
LSF-KEB Holdings, SCA	기타 투자기관	X	80	80	해당사항 없음
엘에스에프포 서울 원 유동화전문유한회사	기타 투자기관	X	73,801	15,049	해당사항 없음
엘에스에프포 서울 두 유동화전문유한회사	기타 투자기관	X	16,504	3,232	해당사항 없음
엘에스에프포 서울 쓰리 유동화전문유한회사	기타 투자기관	X	191,452	16,791	해당사항 없음
제우스유동화전문유한 회사	그외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	X	308,711	27,076	해당사항 없음

해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외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	X	133,324	28,439	해당사항 없음
아플로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외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	X	10,099	1,416	해당사항 없음
아레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외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	X	178,370	11,004	해당사항 없음
극동건설 주식회사	도로건설업	O	706,479	407,837	해당사항 없음
스타리스 주식회사	금융리스업	X	384,746	57,998	24.42% *
극동요업 주식회사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O	41,108	35,721	해당사항 없음
파천산업개발 주식회사	비주거용부동산 관리업	O	13,233	5,661	해당사항 없음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채권추심 신용정보업	O	5,358	3,459	해당사항 없음
계			5,223,735	2,128,839	
비금융회사 소계 (총계액 대한 비율)			766,178 (14.67%)	452,678 (21.26%)	

㉑ 해외소계 특수관계인의 경우 2003 년 8 월 29 일 기준환율인 1 Euro = 1284.56 원 및 US\$ 1 = 1179.90 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임. 자산총액 및 자본총액은 원칙적으로 2003 년 6 월 30 일 기준이나 Lone Star Partners IV, L.P.는 2003 년 3 월 31 일 기준이며, KEB Investors, L.P., KEB Holdings, L.P. 및 LSF-KEB Holdings, SCA 는 현재 설립중이며 설립당시 자산총액 및 자본총액임

㉒ 국내소재 특수관계인의 경우 자산총액 및 자본총액은 아레스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3 년 7 월 31 일 기준, 신한신용정보주식회사는 2003 년 3 월 31 일 기준이며, 다른 회사는 모두 2003 년 6 월 30 일 기준임

* 2002 년 12 월 31 일 기준 회사의 공시자료상 외부감사인의 의견란에 언급된 자료임

(나) 피고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포 엘티디(Lone Star Management Co. IV. Ltd.)의 투자구조상 지위

Lone Star Management Co. IV. Ltd.(Bermuda)
아래 회사의 업무집행조합원
Lone Star Patners IV(U.S.), L.P.(Delaware)
아래 회사의 업무집행조합원 (의결권 100%)
Lone Star Fund IV(U.S.), L.P.
아래 회사에 100% 출자
LSF4 Global Management, Ltd. (Bermuda)
아래 회사의 업무집행조합원 (의결권 100%)
KEB Holding, L.P.(Bermuda)
아래 회사에 100% 출자
LSF-KEB Capital Investments S.ar.L(Luxemburg)
아래 회사에 100% - 1주 출자
LSF-KEB Holings, SCA(Belgium)
아래 회사의 51.02% 지분인수
외환은행

피고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포 엘티디(Lone Star Management Co. IV. Ltd.)는 피고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Lone Star Patners IV(U.S.), L.P.)의 업무집행조합원입니다.

피고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Lone Star Patners IV(U.S.), L.P.)는 피고 론스타 펀드 포(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V(U.S.), L.P.)의 업무집행조합원입니다.

피고 론스타 펀드 포(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V.(U.S) L.P.)는 소외 엘에스에프포 글로벌 매니지먼트 엘티디(LSF4 Global Management, Ltd. (Bermuda)) 주식의 100%를 출자한 자입니다.

소외 엘에스에프포 글로벌 매니지먼트 엘티디(LSF4 Global Management, Ltd. (Bermuda))는 소외 케이이비 홀딩스 엘피(KEB Holding, L.P.(Bermuda))의 업무집행조합원입니다.

소외 케이이비 홀딩스 엘피(KEB Holding, L.P.(Bermuda))는 소외 엘에스에프 케이비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에스에이알엘(LSF-KEB Capital Investments S.ar.L(Luxemburg)) 주식의 100퍼센트를 출자한 자입니다.

소외 엘에스에프 케이비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에스에이알엘(LSF-KEB Capital Investments S.ar.L(Luxemburg))은 피고 엘에스에프 케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LSF-KEB Holdings, SCA(Belgium))의 주식의 1주를 제외한 주식 전부(100%-1주)를 출자한 자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위 표와 같습니다. 표의 위쪽으로 갈수록 지배적 지위에 있는 회사들로서, 상위에 위치하는 회사일수록 하위 회사들을 의사결정의 통로로 이용하여 외환은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의사결정을 지배하여 온 것입니다(갑 제9호증 ‘Lone Star에 대한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자료’ 중의 ‘붙임 1’ ‘Lone Star의 외환은행 투자구조’ 참조)

즉, 피고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포 엘티디(Lone Star Management Co. IV. Ltd.)는 가장 상층에서 아래표의 회사들을 지배한 회사

로서, 갑 제10호증 ‘론스타 투자구조도 텍사스 주 정부자료 캡처화면’을 보면, 피고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Lone Star Patners IV, L.P.)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포 엘티디(Lone Star Management Co. IV. Ltd.)임을 알 수 있고, 피고 론스타 펀드 포 엘피(Lone Star Fund IV(U.S), L.P.)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Lone Star Patners IV, L.P.)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포 엘티디(Lone Star Management Co. IV. Ltd.)와 피고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Lone Star Patners IV, L.P.), 피고 론스타 펀드 포(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V(U.S.). L.P.)는 위 표에서 그 지배를 받은 소외 회사들을 이용하여 피고 엘에스에프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자들입니다.

(다) 피고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Lone Star Partners IV. L.P.)와 론스타 펀드 포(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V(U.S.), L.P.)의 설립목적

심지어 피고 론스타등이 2003년 이 사건 승인 신청 당시 신청인 중 ‘본인’으로 기재한 피고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Lone Star Partners IV. L.P.)와 신청인 3인 중 하나인 론스타 펀드 포(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V(U.S.), L.P.)의 주요 업종은 모두 부동산 거래(Real Estate Transaction)입니다(갑 제11호증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 설립서류, 갑 제12호증 론스타 펀드 포(유에스) 엘피 설립서류).

1. The name of the limited partnership is <u>Lone Star Partners IV, L.P.</u> 6. The nature of the business or the purposes to be conducted or promoted in Texas are as follows: <u>Real Estate Transactions</u>
<갑 제11호증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 (Lone Star Partners IV L.P. 설립서류)> 1. 리미티드 파트너십의 이름은 Lone Star Partners IV, L.P.이다. 6. 사업의 종류 또는 텍사스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거래

1. The name of the limited partnership is <u>Lone Star Fund IV (U.S.), L.P.</u> 6. The nature of the business or the purposes to be conducted or promoted in Texas are as follows: <u>Real Estate Transactions</u>
<갑 제12호증 론스타 펀드 포(유에스) 엘피 (Lone Star Fund IV (U.S.), L.P.) 설립서류> 1. 리미티드 파트너십의 이름은 Lone Star Fund IV (U.S.), L.P.이다. 6. 사업의 종류 또는 텍사스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거래

(라) 국내법 상 존재하지 않는 해외 파트너십 체계에 대한 이해

1) Co. LTD. 및 SARL

이들은 우리 상법상 기업형태의 전형인 법인에 해당하며, Corporation 혹은 Co., Ltd.라는 명칭을 법인명의 뒤에 병기합니다. 한편 SARL의 경우 불어로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라는 의미로 일종의 유한 책임회사입니다.

2) L.P.(Limited Partnership)와 G.P.(General Partnership)

전통적 파트너십은 무한책임의 부담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여전히 대규모 자본동원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경영에는 관심이 없으나 투자에는 관심이 있는 출자 동업자를 흡수할 필요성에 기인하여 Limited Partnership(L.P.)이라는 형태로 이들을 수용하는 법을 미국내 각 주가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곧 L.P.입니다.

종래의 Partnership은 다른 Partner의 과실에 대하여 동료 Partner들이 모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단점이 있었으나, Limited partner(유한책임 파트너)를 신설하여 General partner만 무한책임을 지고, 여타 Limited partner들은 Partnership 내 지분범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도록 개선한 것이 주된 차이입니다.

3)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모든 참가자(member라고 불립니다.)들이 유한책임만 지는 기업형태입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법인의 사회적 신용도를 누리되 Partnership의 제한적 책임과 절세의 장점을 따온 기업형태로 인적회사 같은 전문직종의 조직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형태로 급속히 받아들여졌습니다.

L.L.C.의 설립은 Limited Liability Company Statute에 따라 일정한 등록절차가 요구되며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 뒤에 반드시 L.L.C. 혹은 Limited Liability Company라고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피고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에 대하여

피고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은 2003. 8. 25. 이후부터 계속하여 피고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포 엘티디(Lone Star Management Co. IV. Ltd.)의 대표이사인 자입니다(갑 제13호증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포 엘티디 설립서류’ 제10항 및 제11항을 보면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이 이사이자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갑 제13호증의2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포 엘티디 등기서류’를 보면, 2003. 5. 9.에도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갑 제13호증의3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포 엘티디 이사회 결의서’를 보면, 피고 존 피 그레이켄이 동 회사가 그 지배당하는 자회사를 이용하여 소외 외환은행 주식 51%를 인수하기로 하는 것에 대한 이사회결의에서 이사로 참석하여 결의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 피고 래리 에이 클레인(Larry A. Klane), 피고 마이클 디 톰슨(Michael D. Thomson), 피고 엘리스 쇼트(Ellis Short), 피고 유희원, 피고 래리 에스 오웬(Larry S. Owen), 피고 리처드 에프 웨커(Richard F. Wacker), 피고 스티븐 리(Steven Lee)에 대하여

피고 래리 에이 클레인(Larry A. Klane)은 2009. 3. 31.부터 2012년 2. 9.까지 외환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입니다. 같은 마이클 디 톰슨(Michael D. Thomson)은 2003. 10. 31.부터 2011. 3. 31.까지, 같은 엘리스 쇼트(Ellis Short)는 2003. 10. 31.부터 2011. 3. 31. 까지, 같은 유희원은 2003. 10. 31.부터 2011. 3. 31.까지, 같은 리처드 에프 웨커(Richard F. Wacker)는 2004. 3. 30.부터 2010. 11. 30.까지(리처드 에프 웨커의 경우 2005. 1. 25. 부터 2009. 3. 31.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같은 스티븐 리(Steven Lee)는 2003. 10. 31.부터 2005. 9. 27.까지 각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같은 래리 에스 오

웬(Larry S. Owen)은 2007. 3. 29.부터 2012. 3. 13.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등 이들은 모두 소외 외환은행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들(이하 통칭하여 ‘종전이사들’이라 합니다)입니다(갑 제3호증 외환은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소결

그렇다면 피고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포 엘티디(Lone Star Management Co. IV. Ltd.), 피고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Lone Star Patners IV, L.P.), 피고 론스타 펀드 포(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V(U.S.), L.P.), 피고 존 그레이켄(John P. Grayken)(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론스타등’이라고 합니다.)은 피고 엘에스에프의 특수관계인으로 그 지분(합계 100%) 및/또는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피고 엘에스에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소외 외환은행의 당시 이사들에게도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들입니다.

즉 론스타 등은 피고 엘에스에프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피고 엘에스에프의 대표이사는 소외 론스타 캐피탈 매니지먼트 에스피알엘(Lone Star Capital Management, SPRL)이고, 소외 론스타 캐피탈 매니지먼트 에스피알엘(Lone Star Capital Management, SPRL)의 대표이사는 피고 마이클 디 톰슨(Michael D. Thomson)인데, 피고 마이클 디 톰슨(Michael D. Thomson)은 2003. 10. 31.부터 2011. 3. 31.까지 소외 외환은행의 이사로 재직하였던바, 피고 론스타등이 피고 마이클 디 톰슨(Michael D. Thomson)에 대하여 소외 외환은행의 업무집행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2. 이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의 진행 흐름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03. 9. 4. 당시 은행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은행법’이라 합니다.)상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므로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구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이를 속이고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묵인 하에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이하 “대주주”로도 표현합니다) 승인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6. 승인을 받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후 2003. 10. 30. 피고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Lone Star Partners IV L.P.)와 피고 론스타 펀드 포(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V(U.S.), L.P.)와 피고 엘에스에프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관련 변경 보고’라는 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를 수신자로, 금융감독원장을 참조로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피고 론스타등이 소외 엘에스에프 포 비 코리아 원(LSF IV B Korea I), 소외 엘에스에프 포 비 코리아 투(LSF IV B Korea II), 소외 케이이비 인베스터스 투 엘피(KEB Investors II, L.P.), 소외 케이이비 인베스터스 쓰리 엘피(KEB Investors III, L.P.), 소외 케이이비 인베스터스 포 엘피(KEB Investors IV, L.P.)의 5개의 회사를 새로운 동일인으로 추가하고, 최초 신청 당시의 동일인 목록에서 론스타 펀드 포(버뮤다) 엘피(Lone Star Fund IV(Bermuda) L.P.)를 제외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 론스타등은 이러한 ‘투자자변경’에 따라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여부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할 것인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보고서를 제출한 바로 당일 주식매매대금을 납입하였고, 이

에 따라 소외 외환은행은 그 다음날인 2003. 10. 31. 신주발행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3호증 외환은행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를 통해 피고론스타등은 소외 외환은행주식 51%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007. 3. 31.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가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등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에 관하여 질의한 바 있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 리처드 에프 웨커(Richard F. Wacker)가 이에 대해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러한 질의 또는 이의 제기에도 이익배당을 강행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등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공식 서면 질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갑 제14호증 외환은행 대주주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한편 KBS는 2011. 5. 25.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등의 특수관계인인 소외 피지엠 홀딩스 케이케이(PGM Holdings K.K.)가 일본 내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도하였습니다.

결국 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 피고 엘에스에프가 그 동안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경영하면서 약 2조 2067억여원의 위법한 배당을 받았고, 보유주식을 매각하면서 약 2조 9,533억원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의 및 보도에 따라 피고 종전이사들은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등이 비금융주력자인 것을 알거나 알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종전이사들이 이에 반하여 배당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입니다.

<사건 진행 흐름도>

2003. 9. 2.	론스타등의 동일인 한도초과 보유신청 (구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제16조의2 제1항 위반임)
-------------	---

2003. 9. 26.	금융감독당국 승인 ①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 심사 불이행 (구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위반) ② 피고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의 동일인 중 누락된 특수관계인 일부 - KC Holdings S.A. (극동건설 모회사) -스타타워 주식회사 및 Star Holdings S.A. - U.S. Restaurant Properties, Inc.
--------------	--

2003. 10.29.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관련 변경보고 이른바 ‘투자자 변경’ 신고한 특수관계인 중 론스타 펀드 포(버뮤다)가 제외되고 케이이비 인베스터스 투, 케이이비 인베스터스 쓰리, 케 이이비 인베스터스 포, 엘에스에프 포 비 코리아 원, 엘 에스에프 포 비 코리아 투가 특수관계인으로 추가되었음 ;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인하여 동일인이 변경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에 대한 별 도의 심사 부존재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 심사 불이행
--------------	--

2003. 10. 30.	피고 론스타등 주식 매매 및 인수대금 납입
---------------	-------------------------

2003. 10. 31.	외환은행 신주발행 및 등기
---------------	----------------

2007. 3. 31.	주주총회에서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가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등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이후 공식 서면 질의 그러나 이러한 이의 제기가 있었음에도 배당강행
--------------	--

2007. 3. 29.	이러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좌측 표 각 날짜에 각 이익배당(자세한 배당내용은 후술하겠습니다.)
2008. 3. 28.	
2009. 3. 31.	
2010. 3. 30.	
2010. 8. 4.	
2010. 11. 9.	
2011. 3. 31.	

2011. 5. 25.	KBS 론스타 일본 골프장 법인 (PGM Holdings) 보도
--------------	-------------------------------------

2011. 7. 1.	위 보도에 따라 피고 엘에스에프 및 피고 론스타등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종전이사들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익배당
-------------	--

2011. 11. 18.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 심사 없이 주가조작에 기해 단순 매각명령(10% 초과분)
---------------	--

2012. 2. 9.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론스타 지분 모두 인수
-------------	------------------------------------

3. 외환은행에 대한 소제기 대상자들의 행위

가.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등의 주식 양수 및 매각과 이익배당

피고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Lone Star Partners IV, L.P.)와 피고 론스타 펀드 포(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V(U.S.), L.P.) 및 피고 엘에스에프는 자신들의 동일인들을 고의로 누락하여 자신들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함으로써 2003. 9. 2. 당시 적용되던 구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원회’라 합니다)에 외환은행의 주식에 관하여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을 하여 2003. 9. 26.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환은행이 발행하는 신주 및 소외 코메르츠뱅크, 소외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의 주식 합계 325,851,715주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외 코메르츠뱅크와 소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환은행의 주식 90,898,285주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에 관하여,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승인을 받았습니다.

피고 엘에스에프는 위 초과보유승인에 따라 외환은행의 발행주식 중 합계 416,750,000주를 취득하였다가, 그 일부를 매도하여 외환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1.02%인 329,042,672주를 보유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 론스타등은 피고 엘에스에프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사들을 추천하고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함으로써 외환은행의 이사회를 장악해 왔습니다.

이후 2012. 1. 27. 금융위원회가 소외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함으로써 피고 엘에스에프는 자신의 보유분을

매각하였습니다. 피고 론스타등은 2011. 12. 2. 당초 2010. 11. 25. 소외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와 체결했던 주식매매계약을 정정하여 주당 11,900원(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에 보유 주식 329,042,672주를 약 3조 9156억원에 모두 매각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정확히는 3,915,607,796,800원입니다.).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등은 외환은행 인수시 구주분인 코메르츠뱅크보유분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보유주식을 약 3,083억원에 매입하고, 소외 외환은행이 발행한 신주 41%를 약 1조 750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외환은행 주식 51.00%를 인수한 것입니다.

피고 론스타등은 주식 매각 명령에 따른 매각으로 차익을 획득하는 한편,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주주총회에서는 이익배당결의에 참여하여 이익을 배당받은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7. 3. 29.에는 주당 1000원을 배당받아 약 4,168억원을 챙겼고, 2008년 3. 28. 에는 주당 700원을 배당받아 약 2,303억원을 챙겼습니다. 2009. 3. 31.에는 주당 125원을 기준으로 약 411억원을 배당받았으며, 2010. 3. 30. 같은 해 8. 4., 같은해 11. 9.에는 각 510원, 100원, 135원을 기준으로 각 약 1,678억원, 약 329억원, 약 444억원을 배당받았습니다. 2011. 3. 31. 및 같은해 7. 1.에는 주당 각 850원 및 1,510원을 기준으로 약 2,797억원 및 약 4,986억원을 배당받았습니다.(배당액을 합치면 약 1조 7099억원입니다.). 정확한 배당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배당결의일	주당배당액(원)	소유주식	배당총액(원)
2007. 3. 29.	1,000	416,750,000	416,750,000,000
2008. 3. 28.	700	329,042,672	230,329,870,400
2009. 3. 31.	125	329,042,672	41,130,334,000
2010. 3. 30.	510	329,042,672	167,811,762,720
2010. 8. 4.	100	329,042,672	32,904,267,200

2010. 11. 9.	135	329,042,672	44,420,760,720
2011. 3. 31.	850	329,042,672	279,686,271,200
2011. 7. 1	1,510	329,042,672	496,854,434,720
합계			1,709,887,700,960

나. 이사들 및 이사로 의제되는 자들의 행위

피고 론스타등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업무집행지시자입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등 참조). 피고 엘에스에프는 외환은행과 특수관계인인 자이며, 최대주주로서 외환은행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부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배당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론스타등은 자신들의 자회사에 대한 지배적 지분 및 업무집행조합원(General Partner)으로서 의사결정에 대한 지배적 영향을 통하여 그 자회사인 외환은행의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입니다.

또한 피고 종전이사들은 외환은행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등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익배당의 안건을 상정하거나 찬성하였던 자들입니다.

4.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의 론스타 지배 구조

가. 피고 론스타등과 동일인인 피고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은 소외 LSF III와도 동일인

한편, 피고 론스타등과 피고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이 동일인임은 상술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은 소외 LSF III와도 동일인이므로 소외 LSF III와 피고 론스타등 또한 동일인입니다.

(1) 동경상화은행과의 영업양도계약에 의한 증명

피고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은 소외 론스타 펀드 쓰리 (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II, (U.S.), L.P.)와 소외 론스타 펀드 쓰리 (버뮤다) 엘피(Lone Star Fund III, (Bermuda) L.P.)의 특수관계인입니다. 소외 론스타 펀드 쓰리 (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II, (U.S.), L.P.)와 소외 론스타 펀드 쓰리 (버뮤다) 엘피(Lone Star Fund III, (Bermuda)L.P.)는 2001. 1. 25.(平成 13년 1월 25일) 소외 주식회사 동경상화은행(東京相和銀行)과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갑 제15호증 영업양도계약서). 이 때 피고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은 소외 론스타 펀드 쓰리 (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II, (U.S.), L.P.)와 소외 론스타 펀드 쓰리 (버뮤다) 엘피(Lone Star Fund III, (Bermuda) L.P.)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소외 론스타 파트너스 쓰리 엘피(Lone Star Partners III, L.P.)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소외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쓰리 엘티디(Lone Star Management Co. III, Ltd.)의 대표이사로 기명날인 하였습니다(갑 제 15호증 영업양도계약서 제15 쪽).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

(아래 회사의 대표이사)

Lone Star Management, Co. III,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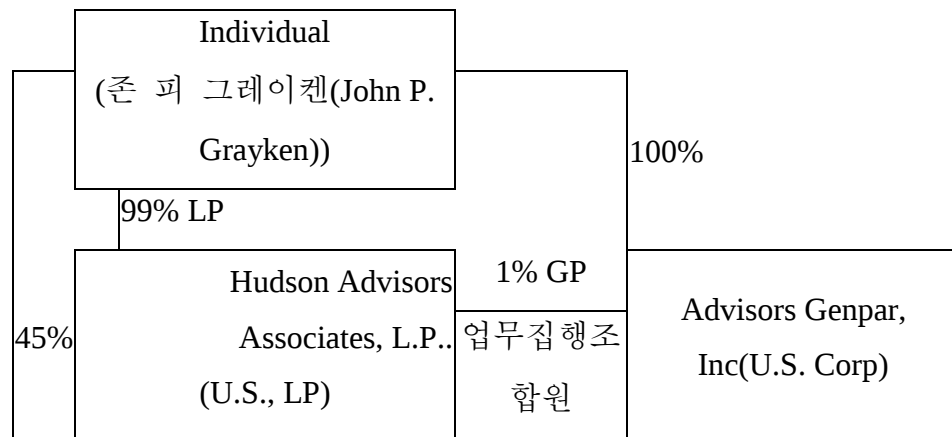
그렇다면 피고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과 소외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쓰리 엘티디(Lone Star Management Co. III. Ltd.)와 소외 론스타 파트너스 쓰리 엘피(Lone Star Partners III, L.P.) 및 소외 론스타 펀드 쓰리 (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II, (U.S.), L.P.)와 소외 론스타 펀드 쓰리 (버뮤다) 엘피(Lone Star Fund III, (Bermuda) L.P.)는 구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각목¹에 따른 기업집단이며 동조 제3호에 의하여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므로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됩니다.

¹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
3.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그런데 구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제8호²에 의하여 본인인 피고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Lone Star Partners IV L.P.)와 피고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은 특수관계인입니다(왜냐하면 피고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은 본인인 피고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Lone Star Partners IV L.P.)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피고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포 엘티디(Lone Star Management Co. IV. Ltd.)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고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위 회사들[소외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쓰리 엘티디(Lone Star Management Co. III. Ltd.)와 소외 론스타 파트너스 쓰리 엘피(Lone Star Partners III, L.P.) 및 소외 론스타 펀드 쓰리 (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II, (U.S.), L.P.)와 론스타 펀드 쓰리 (버뮤다) 엘피(Lone Star Fund III, (Bermuda) L.P.)] 또한 피고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Lone Star Partners IV L.P.)와 특수관계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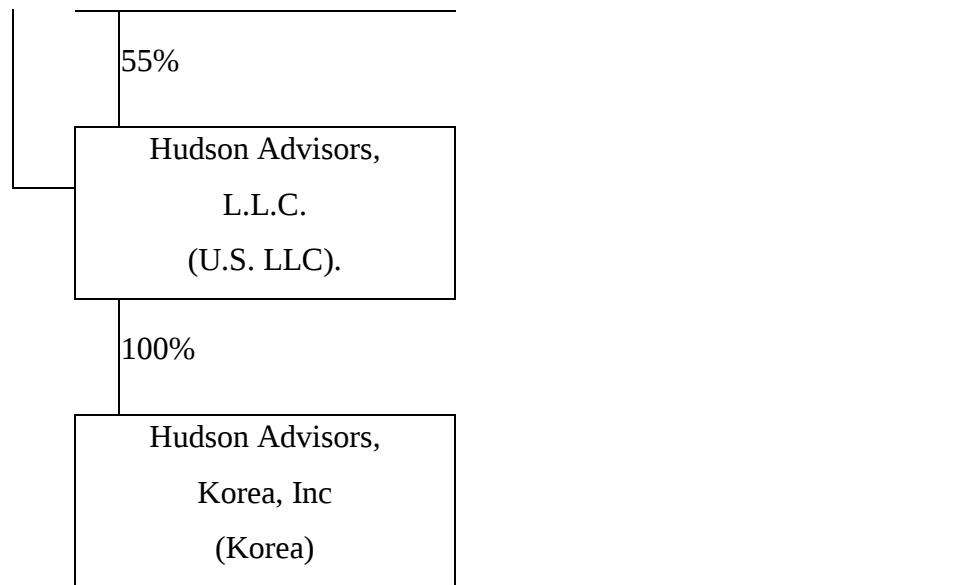
(2) 검찰수사보고에 의한 증명



² 제 1 조의 4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에서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본인과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8. 본인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 그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한편, 2005. 10.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론스타펀드가 대한민국에 설립한 관계회사 등 임직원 현황 편철보고”라는 수사보고에도 이러한 지배구조가 잘 나타납니다(위 그림 참조). 이에 따르면 한 개인(피고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외 허드슨 어드바이저스 엘엘씨(Hudson Advisors L.L.C.)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수사보고의 제2쪽에 도시된 구조도에 의하면 피고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이 LSF III와 피고 론스타등을 포함한 범 론스타 펀드 4호를 모두 지배하고 있는데 두펀드의 계열회사를 동일한 상자 안에 위치시키는 등 두 펀드를 특별히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 수사보고는 LSF III와 피고 론스타등을 포함한 범 론스타 펀드 4호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배 하에 놓여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갑제16호증서울중앙지방검찰청수사보고).

(3) 피고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의 소외 론스타 III 지배 구조

피고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은 소외 허드슨 어드바이저스 엘엘씨(Hudson Advisors LLC)라는 미국 소재 투자자문사를 통해 론스타 관련 일체의 펀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소외 허드슨 어드바이저스 엘엘씨가 미국법(Sections 203 and 204 of the Investment Advisers Act [15 U.S.C. §§ 80b-3 and 80b-4])에 따라 공시한 (<http://www.adviserinfo.sec.gov>) 자료에 의하면, 소외 허드슨 어드바이저스 엘엘씨는 론스타가 2003년 이 사건 승인 신청을 할 당시 동일인으로 보고한 회사들을 포함하여 13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지배관계의 정점에는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자료 공시 웹사이트 (<http://direct.sos.state.tx.us/>)에는 론스타의 중요계열사에 대한 설립서류 및 세금신고서류가 공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소외 론스타 III와 피고 론스타등을 포함한 범 론스타 펀드 4호는 모두 피고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에 의해 지배되는 계열회사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위 그림을 보면, 피고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은 허드슨 어드바이저스 어소시에이트 엘피(Hudson Advisors Associates, L.P.) 지분의 99%를 소유하고 있고, 어드바이저스 젠파 아이엔씨(Advisors Genpar, Inc)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어드바이저스 어소시에이트 엘피(Hudson Advisors Associates, L.P.)는 허드슨 어드바이저스 엘엘씨(Hudson Advisors L.L.C.)의 지분 55%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5%는 피고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어드바이저스 엘엘씨(Hudson Advisors L.L.C.)는 허드슨 어드바이저스 코리아 아이엔씨(Hudson Advisors Korea, Inc)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 제17호증 브라조스 어드바이저스 어소시에이트 엘피 설립증빙

서류를 보면, 1995. 1. 31. 브라조스 어드바이저스 어소시에이트 엘 피가 브라조스 켄파 아이엔씨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갑 제17호증의2 브라조스 어드바이저스 어소시에이트 등기경정서류를 보면, 1995. 11. 15. 새로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어드바이저스 켄파 아이엔씨가 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갑 제17호증의3 허드슨 어드바이저스 어소시에이트 상호경정서류를 보면, 1995. 12. 18. 브라조스 어드바이저스 어소시에이트 엘피는 허드슨 어드바이저스 어소시에이트 엘피로 상호를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고, 갑 제18호증 브라조스 어드바이저스 엘엘씨 정관을 보면, 1995. 1. 31. 존 피 그레이켄이 최초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갑 제18호증의2 브라조스 어드바이저스 엘엘씨 정관 변경 내용을 보면, 상호를 허드슨 어드바이저스 엘엘씨로의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 존 피 그레이켄은 허드슨 어드바이저스 엘엘씨의 이사이고, 어드바이저스 켄파 아이엔씨는 허드슨 어드바이저스 어소시에이트 엘피의 업무집행조합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각목 소정의 기업집단이므로 이들 또한 구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제8호에 의한 특수관계인입니다.

한편, 피고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은 상술한 바와 같이 소외 어드바이저스 켄파 아이엔씨(Advisors Genpar, Inc)의 유일한 주주이면서, 소외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쓰리(Lone Star Management Co. III)의 대표이사이자 유일한 주주입니다(갑 제19호증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쓰리 엘티디세금신고서류). 소외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쓰리 엘티디(Lone Star Management Co. III, Ltd.)는 소외 론스타 파트너스 쓰리 엘피(Lone Star Partners III, L.P.)의 업무집행조합원입니다.

다(갑 제20호증 론스타 파트너스 쓰리 엘피사업신고서류).

소외 론스타 파트너스 쓰리 엘피(Lone Star Partners III, L.P.)는 소외 론스타 펀드 쓰리(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II(U.S.), L.P.)의 업무 집행조합원이자(갑 제21호증 론스타 펀드 쓰리(유에스) 엘피 사업 신고서류), 소외 엘에스에프쓰리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투(LSF3 Capital Investment II)의 운영 구성원(managing member)입니다.

소외 론스타 펀드 쓰리(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II(U.S.), L.P.)는 소외 엘에스에프 쓰리 젠파 원 엘엘씨(LSF3 GenPar I, LLC)의 유일한 구성원입니다.

소외 엘에스에프 쓰리 젠파 원 엘엘씨(LSF3 GenPar I, LLC)는 소외 엘에스에프 쓰리 알리오씨 원 엘피(LSF3 REOC I, L.P.)의 업무집행 조합원입니다.

소외 엘에스에프 쓰리 알리오씨 원 엘피(LSF3 REOC I, L.P.)는 소외 론스타 펀드 쓰리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원(Lone Star Fund III Capital Investment I)의 유일한 구성원입니다.

그렇다면 피고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과 소외 론스타III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들로 당시 적용되는 은행법 시행령(2004. 3. 1. 대통령령 제182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은행법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조의4 제8호의 특수관계인입니다.(이와 관련되어서는 <누락된 특수관계인 소외 U.S. Restaurant Properties, Inc> 항목에서 증명하겠습니다.)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 (아래 회사의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이사)	
sole stockholder	
Lone Star Manament Co. III (아래 회사의 업무집행조합원)	
general partner	
Lone Star Partner III, L.P.. (아래 회사의 업무집행조합원)	
general partner	
Lone Star Fund III(U.S.), L.P. (아래 회사의 유일한 구성원)	
sole member	
LSF3 GenPar I, LLC (아래 회사의 업무집행조합원)	
general partner	
LSF3 REOC I, L.P. (아래 회사의 유일한 구성원)	
sole memeber	
LSF3 Capital Investment I (U.S.RP의 2,312,753주 보유)	LSF3 Capital Investment II (U.S.RP의 1,417,012주 보유)

(갑 제22호증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유에스알피의 2001. 8.

13. 신고서류중 16면, 17면)

5. 소제기 대상자들의 위법행위

가. 피고 엘에스에프 및 피고 론스타등은 승인 신청 당시 비금융주력자이며 은행법을 잠탈한 사실

(1) 주식 양수 당시의 은행법

(가)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의 정의에 관한 규정

피고 엘에스에프가 외환은행의 주식을 양수할 당시의 구 은행법은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일인”이라 함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제2조 제1항 제8호). “비금융주력자”란 (i)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동조 제1항 제9호 가목)’인 경우와 (ii)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동조 제1항 제9호 나목)’을 말합니다.

(나)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제한에 관한 규정

구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다) 위 규정에 대한 해석

그렇다면, 본인 및 당시 구 은행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인³인자는 구

³ 제 1 조의 4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에서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본인과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 조의 2 제 1 항제 2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경영자 및 동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인 및 제 1 호 또는 제 4 호의 자가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이들이 제 3 호 또는 제 5 호의 자와 합하여 100 분의 50 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중의 1 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3. 본인 및 제 1 호·제 2 호·제 4 호의 자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 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4. 본인, 제 2 호 또는 제 3 호의 자에게 고용된 자(사용자가 법인·조합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하여 고용된 자 또는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5. 본인 및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자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6. 본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을 지배하는 자(이하 "계열주"라 한다)인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계열주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 조제 1 호 각목의 1 및 동조제 2 호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동조제 1 호 및 제 2 호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회사의 임원

은행법상 동일인이고, 이들 중 ①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과 ②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은, 각 비금융주력자입니다.

(2) 피고 엘에스에프 및 피고 론스타등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가) 2003. 9. 4. 기준 피고 엘에스에프 및 피고 론스타등이 비금융주력자인 사실

1)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에 대한 위법한 신청 및 위법한 승인

2003. 9. 4.⁴ 피고 론스타등이 보유승인 신청을 할 당시 본인인 피고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Lone Star Partners IV, LP)의 특수관계인으로 23개의 회사만을 신고하면서 동일인 자

7. 본인이 계열주와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이거나 계열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 그 계열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8. 본인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 그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9. 본인 또는 제 1 호 내지 제 8 호의 자와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

[본조신설 2002.8.21]

⁴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서는 2003. 9. 2. 작성되고, 동월 3.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었으며, 동월 4. 금융감독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본액 총액은 2,128,809백만 원, 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액 총액은 452,678백만 원으로서,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본액 비율이 21.26%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은 766,178백만 원이라고 신고하였습니다(갑 제8호증 동일인초과보유한도승인신청서 제5면 ‘3.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현황’). 즉 피고 론스타등은 자신이 구 은행법 제1항 제9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고의로 자신들의 동일인들을 누락하여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가 초과보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동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초과보유에 대한 승인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 후 피고 론스타등은 2003. 9. 26. 이 승인 신청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법 제15조 3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의 점에 대하여 보유승인을 받았습니다(갑 제9호증 론스타에 대한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

2) 이 승인 당시 누락된 주요 특수관계인

가) 소외 케이씨 홀딩스 에스에이(KC Holdings S.A.)

그런데 동일인 내역에는 피고 론스타등의 특수관계인들이 상당수 누락되었습니다.

위 신청서의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현황에는 소외 론스타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에스에이알엘(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A.R.L)과 소외 극동건설이 각 구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8호에 따라 피고 론스타 파트너스 포엘피(Lone Star Patners IV, L.P.)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외 극동건설의 지분 91.93%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면서, 또한 소외 론스타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에스에이알엘(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A.R.L)이 9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소외 케이씨 홀딩스 에스에이(KC Holding S.A.(당시 자본금 44,491백만원))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갑 제23호증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서). 이러한 지분관계에 비추어 피고 론스타등은 소외 케이씨 홀딩스 에스에이(KC Holdings S.A.)가 구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5호 및 제8호에 의하여 피고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현황’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입니다.



소외 케이씨 홀딩스 에스에이(KC Holdings S.A.)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비금융회사인 극동건설 주식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이므로 비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회사가 은행법 소정의 비금융회사(구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5 제1항 제1호)라는 점은 명백합니다(비금융회사여부 및 정의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12카합496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문 제8쪽에는 피고 론스타 펀드 포(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V(U.S.), L.P.)가 소외 론스타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에스에이알엘(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A.R.L.)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기업집단에 같이 속해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보유승인 당시 소외 론스타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에스에이알엘(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A.R.L.)의 지배하에 있던 소외 케이씨 홀딩스 에스에이(KC Holdings S.A.)가 역시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로서, 피고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Lone Star Partners IV, L.P.)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을 긍정하고 있습니다(갑 제24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496 결정문 제8면 참조).

나) 소외 주식회사 스타타워 및 그 모회사인 스타홀딩스 에스에이(Star Holdings S.A.) 누락

또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스타타워 주식회사(자산총액 614,794 백만 원)와, 스타타워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인 스타 홀딩스 에스에이(Star Holdings S.A.) 역시 누락되어 있습니다(갑 제25호증 주식회사 스타타워 감사보고서 참조. 제5쪽의 재무제표 대차

대조표를 보면 주식회사 스타타워의 자산총계를 알 수 있고 제10쪽 주석을 보면 스타 홀딩스 에스에이(Star Holdings S.A.)가 스타타워 주식회사의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을 정점으로 한 소외 론스타 펀드 III(LSF3 Korea Capital I Ltd. 및 LSF3 Korea Patners L.L.C.를 통칭함)는 소외 스타 홀딩스 에스에이(Star Holdings S.A.)를 설립하여 2001. 6. 20. 증자를 하고 소외 주식회사 스타타워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갑 제26호증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7650)의 제3쪽 이하 ‘1. 처분의 경위’의 ‘다’항목에서 론스타 III가 소외 스타홀딩스 에스에이(Star Holdings S.A.)를 설립하고 소외 주식회사 스타타워의 주식 전부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소외 론스타 펀드 III는 초과보유신청의 본인인 피고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Lone Star Partners IV, L.P.)의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렇다면 소외 스타 홀딩스 에스에이(Star Holdings S.A.)와 그 자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스타타워는 구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5호 및 제8호에 의한 특수관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승인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소외 스타 홀딩스 에스에이(Star Holdings S.A.)의 대표이사는 피고 엘에스에프의 대표이사인 미합중국인 피고 마이클 디 톰슨(Michael D. Thomson)과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를 역임한 피고 스티븐 리(Steven Lee)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 승인 신청 당시 소외 주식회사 스타타워의 대표이사도 피

고 마이클 디 톰슨(Michael D. Thomson)입니다.

따라서 소외 스타홀딩스 에스에이(Star Holdings S.A.)와 그
자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스타타워는 구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8호에 의하여 피고 론스타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가사 지분관계가 없어도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한
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보고에서 소외 허드
슨 어드바이저 코리아(Hudson Advisor Korea)와 피고 론스
타 펀드 포(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V(U.S.), L.P.)가
지분관계는 없으나 피고 론스타 펀드 포(유에스) 엘피
(Lone Star Fund IV(U.S.), L.P.) 소속회사와 임원 겸직(임원

4인중 2인 겸임, 과거 대표이사 겸임 등) 및 거래관계(피고 론스타 펀드 포(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V(U.S.), L.P.) 소속 자산유동화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전담)가 있어 특수관계인 관계를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갑 제27호증 (주)한국외환은행 등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보고).

-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는 위규행위가 발생한 기간('00.12.8 ~'05.3.14)중 론스타펀드Ⅳ와 지분관계('01. 12.12~'05.2.18)가 있어 특수관계인 관계가 인정되며
 -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는 론스타펀드Ⅳ와 지분관계는 없으나 론스타펀드Ⅳ 소속회사와 임원 겸직* 및 거래관계**가 있어 특수관계인 관계 인정이 가능
- * 임원 4인중 2인 겸임, 과거 대표이사 겸임 등 사례
 ** 론스타펀드Ⅳ 소속 자산유동화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전담

<갑 제27호증 '주)한국외환은행 등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보고' 의 제3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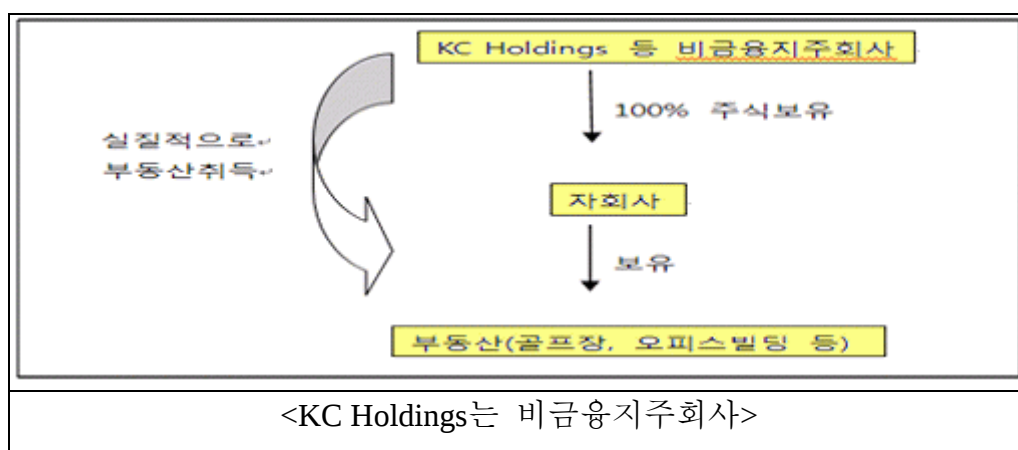
다) 소외 케이씨 홀딩스 에스에이(KC Holdings S.A)와 소외 스타 홀딩스 에스에이(Star Holdings S.A.)는 비금융회사

구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해 금융회사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기타 투자기관은 투자기관의 하위 개념인데, 투자기관은 “자산운용회사(구 증권투자회사)”와 “기타 투자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양자는 자금의 조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일 뿐 자금의 운용 측면은 동일한 성격을 가져야 하며, 그것은 “금

용자산”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에는 기타 투자기관(65939)에 대하여 ‘기타 투자기관으로서 증권발행 및 신탁자금 이외의 자금(개인자산이나 채권, 어음 및 기타 채무자산 등)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외사유로 지주회사를 들고 있는데, 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의 지주회사를 보면 지주회사란 ‘다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경영에는 참가하지 않고 영향력만 행사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해외에 사업장을 둔 국내 본사가 포함되며, 금융지주회사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금융지주회사란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12카합496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문에서도 ‘주식 보유 목적의 특수목적회사(SPC) 또는 지주회사들이 금융회사인지 여부는 보유하고 있는 대상 회사의 산업이 금융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금융업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소외 케이씨 홀딩스 에스에이(KC Holdings S.A.)는 피고 론스타등이 이 사건 신청 당시 비금융회사라고 밝힌 도로건설업을 영위하는 소외 극동건설 주식회사의 모회사(극동건설 지분 91.93%보유)로서 주식의 소유를 통해 비금융회사인 극동건설 주식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소외 스타 홀딩스 에스에이(Star Holdings S.A.)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비금융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스타타워의 주식 100%를 보유하여 이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소외 케이씨 홀딩스 에스에이(KC Holdings S.A.)와 소외 스타 홀딩스 에스에이(Star Holdings S.A.)는 모두 비금융 사업체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여 회사의 경영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회사이므로 비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됩니다.

1) 누락된 특수관계인 소외 유에스 레스토랑 프로퍼티스 아이엔씨(U.S. Restaurant Properties, Inc)

가) 소외 유에스 레스토랑 프로퍼티스 아이엔씨(U.S.

Restaurant Properties, Inc) 또한 누락된 특수관계인

소외 유에스 레스토랑 프로퍼티스, 아이엔씨(U.S. Restaurant Properties, Inc 이하 ‘유에스알피’라 합니다.)는 2003. 6. 30. 현재 자산이 미화 571,161천달러인 회사로 한화로 당시 자산총액 약 681,395백만원 정도 규모의 회사입니다(갑 제 28호증 2003. 6. 30. 현재 유에스알피 대차대조표의 제1면 및 제2면 참조)

나) 소외 유에스알피의 최대 주주인 소외 론스타III

소외 엘에스에프쓰리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원(LSF3 Capital Investment I)은 2003년 내내 소외 유에스알피의 발행주식 2,312,753주를 보유한 자이고, 소외 엘에스에프쓰리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투(LSF3 Capital Investment II)는 같은 기간 소외 유에스알피의 발행주식 1,417,012주를 소유한 자입니다. 이 두 회사는 합하여 소외 유에스알피 발행주식 총수의 18.8%에 해당하는 3,729,625주를 소유한 것입니다.(갑 제22호증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유에스알피의 2001. 8. 13. 신고서류중 16면 및 17면 참조)

Lone Star Funds Two stockholders of the Company (LSF3 Investments I, LLC, a 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LSF3 Investments II, LLC, a 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the "Lone Star Funds")) owned approximately 19.1% of the Company's outstanding common stock as of September 30, 2003. See Note 11, "Subsequent Events," for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the Company's common stock offering on October 17, 2003, after which the interest of Lone Star Funds, as selling stockholders, was reduced to approximately 9.9%. 16 <유에스알피의 최대주주인 론스타 III>

.(갑 제22호증의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유에스알피의 서류의 발췌본 중 제16면으로 기재된 페이지 참조)

Security Ownership of Certain Beneficial Owners.

The following table and the notes thereto set forth certain information with respect to the beneficial owners of shares of Common Stock, at March 5, 2004, by each person or group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13(d)(3) of the Exchange Act who is known to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to be the **beneficial owner of more than five percent** of the outstanding **Common Stock** of the Company:

Name and Address of Beneficial Owner	Number of Shares Beneficially Owned	Percentage of Common Stock
LSF3 Capital Investments I, LLC	1,382,633(1)	
(1) The sole member of LSF3 Capital Investments I, LLC, a 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Investment LSF3 REOC I, L.P., a Delaware limited partnership (REOC). The general partner of REOC is LSF3 GenPar I, LLC, a 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GenPar). The sole member of GenPar is Lone Star Fund III (U.S.), L.P., a Delaware limited partnership (Lone Star US). The general partner of Lone Star US is Lone Star Partners III, L.P., a Bermuda limited partnership (Partners III). The general partner of Partners III is Lone Star Management Co. III, Ltd., a Bermuda exempt limited liability company (Management III). John P. Grayken , a citizen of Ireland, is the sole stockholder, a director and President of Management III. Mr. Grayken is also a shareholder and sole director of Advisors GenPar, Inc., a Texas corporation (Advisors GenPar). Hudson		

<유에스알피의 최대주주인 론스타 III>

(갑 제22호증의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유에스알피의 서류의 발췌본 중 제48면으로 기재된 페이지 참조)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 (아래 회사의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이사)	
sole stockholder	
Lone Star Manament Co. III (아래 회사의 업무집행조합원)	
general partner	
Lone Star Partner III, L.P.. (아래 회사의 업무집행조합원)	
general partner	
Lone Star Fund III(U.S.), L.P. (아래 회사의 유일한 구성원)	
sole member	
LSF3 GenPar I, LLC (아래 회사의 업무집행조합원)	
general partner	
LSF3 REOC I, L.P.. (아래 회사의 유일한 구성원)	
sole memeber	managing member
LSF3 Capital Investment I (U.S.RP의 2,312,753주 보유)	LSF3 Capital Investment II (U.S.RP의 1,417,012주 보유)

한편, 피고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은 상술한 바와 같이 소외 어드바이저스 젠파 아이엔씨(Advisors Genpar, Inc)의 유일한 주주이면서, 소외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쓰리(Lone Star Management Co. III)의 대표이사이자 유일한 주주입니다. 소외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쓰리(Lone Star Management Co. III)는 소외 론스타 파트너스 쓰리 엘피(Lone Star Partners III, L.P.)의 업무집행조합원입니다.

소외 론스타 파트너스 쓰리 엘피(Lone Star Partners III, L.P.)는 소외 론스타 펀드 쓰리(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II(U.S.), L.P.)의 업무집행조합원입니다. 또한 소외 엘에스에프쓰리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투(LSF3 Capital Investment II)의 운영 구성원(managing member)이고 소외 엘에스에프쓰리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투(LSF3 Capital Investment II)는 소외 유에스알피의 주식 1,417,012주를 보유한 자입니다.

소외 론스타 펀드 쓰리(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II(U.S.), L.P.)는 소외엘에스에프 쓰리 젠파 원 엘엘씨(LSF3 GenPar I, LLC)의 유일한 구성원입니다.

소외 엘에스에프 쓰리 젠파 원 엘엘씨(LSF3 GenPar I, LLC)는 소외 엘에스에프 쓰리 알리오씨 원 엘피(LSF3 REOC I, L.P.)의 업무집행조합원입니다.

소외 엘에스에프 쓰리 알리오씨 원 엘피(LSF3 REOC I, L.P.)는 소외 엘에스에프쓰리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원(LSF3 Capital Investment I)의 유일한 구성원입니다. 한편 소외 엘에

스에프 쓰리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원(LSF3 Capital Investment I)은 소외 유에스알피의 주식 2,312,753주를 보유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피고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과 소외 론스타III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들로 구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8호의 특수관계인입니다(갑 제22호증의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유에스알피의 서류의 발췌본 중 제8면으로 기재된 페이지 참조).

SEC Info - FF-TSY Holding CO II/LLC - 10-K/A - For 12/31/02

페이지 9 / 16

Item 12. Security Ownership of Certain Beneficial Owners and Management and Related Stockholders Matters

Security Ownership of Certain Beneficial Owners

The following table and the notes thereto set forth certain information with respect to the beneficial ownership of shares of Common Stock, as of March 31, 2003, by each person or group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13(d)(3) of the Exchange Act who is known to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to be the **beneficial owner of more than five percent** of the outstanding **Common Stock** of the Company:

Name and Address of Beneficial Owner	Number of Shares Beneficially Owned	Percent of Class
Lone Star Fund III (U.S.), L.P. and Entities affiliated with Lone Star Fund III (U.S.), L.P.(1)	3,729,765	18.8%

(1)

Includes 2,312,753 shares of Common Stock owned or available for purchase pursuant to agreement with the Company held by LSF3 Capital Investments I, LLC, a 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Investments I") and 1,417,012 shares of Common Stock owned or available for purchase pursuant to agreement with the Company held by LSF3 Capital Investments II, LLC, a 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Investments II"). The sole member of Investments I is LSF3 REOC I, L.P., a Delaware limited partnership ("REOC"). The general partner of REOC is LSF3 GenPar I, LLC, a 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GenPar"). The sole member of GenPar is Lone Star Funds III (U.S.), L.P., a Delaware limited partnership ("Lone Star Funds"). The general partner of Lone Star Funds is Lone Star Partners III, L.P., a Bermuda limited partnership ("Partners III"). The general partner of Partners III is Lone Star Management Co. III, Ltd., a Bermuda exempted limited liability company ("Management III"). **John P. Grayken ("Grayken")**, a citizen of Ireland, is the sole stockholder, a director and President of Management III. Grayken is also sole shareholder and director of Advisors GenPar, Inc., a Texas corporation ("Advisors GenPar"). The managing member of Investments II is Partners III. Hudson Advisors, LLC, a Texas limited liability company ("Hudson"), is an asset manager, and, pursuant to a proxy granted by Investments I and Investments II, has certain voting rights with respect to the shares of Common Stock owned by Investments I and II, pursuant to an agreement among Investments I, Investments II and Hudson (the "Asset Management Agreement"). The managing member of Hudson is Hudson Advisors Association, L.P., a Texas limited partnership ("Advisors"). The general partner of Advisors is Advisors GenPar. The Percent of Class is computed assuming that Investments I and Investments II are issued the maximum number of shares of Common Stock which they are contractually due (3,729,765 shares), which will increase the Company's issued and outstanding Common Stock to a total of 19,294,607 shares (without giving effect to any other transaction that might occur).

The address of the principal offices and business address of Investments I, Investments II, REOC, GenPar and Lone Star Funds is 717 N. Harwood, Street, Suite 2200, Dallas, Texas 75201. The address of the principal offices and business address of Hudson, Advisors and Advisors GenPar is 717 N. Harwood, Street, Suite 2200, Dallas, Texas 75201. The address of the principal offices and business address of Partners III and Management III is Claredon House, Two Church Street, Hamilton, HM 11, Bermuda. The business address of Grayken is 50 Welbeck Street, London, United Kingdom, W1M7HE.

Security Ownership of Management

The following table and the notes thereto set forth certain information with respect to the beneficial ownership of shares of Common Stock of the Company, as of March 31, 2003 (except as

8

<유에스알피의 최대주주인 론스타 III와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의 관계>

다) 소외 론스타 III가 소외 유에스알피의 이사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절반을 임면

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유에스알피의 이사회 중 4명인 소외 프레드 에이치 마골린(Fred H. Margolin), 소외 대럴 엘롤프(Darrel L. Rolph), 소외 데이비드 케이 롤프(David K. Rolph), 소외 제랄드 에이치 그라함(Gerald H. Graham)은 2001. 3. 9. 사임하였습니다. 게다가 소외 프레드 에이치 마골린(Fred H. Margolin)은 이사회 의장직과 CEO직을 사임하였으며, 소외 유에스알피와 관련된 모든 직위에서 사임하였습니다 (갑 제22호증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유에스알피의 2001. 8. 13. 신고서류중 제15면 하단 참조).

소외 론스타 펀드 쓰리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원(Lone Star Fund III Capital Investment I)과 소외 론스타 펀드 쓰리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투(Lone Star Fund III Capital Investment II)는 데이비드 더블유 웨스트(David W. West), 렌 알렌 주니어(Len Allen Jr.), 로버트 지델(Robert Gidel), 그레고리 아이 스트롱(Gregory I. Strong)을 4명의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특히 데이비드 더블유 웨스트(David W. West)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갑 제22호증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유에스알피의 2001. 8. 13. 신고서류중 제15면 하단 참조).

한편, 2003년 9월을 전후한 시기에 소외 유에스알피의 이사의 변동사항은 전무하며, 이사는 모두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4명이 론스타 측 이사입니다.

소외 데이비드 더블유 웨스트(David W. West)는 당시 소외 유에스알피 이사회의 의장이며 CEO였다가 나중에는 이사회 의장직만을 유지한 자인데, 그는 동일한 시기에 소외 론스타 어퀴지션스 엘엘씨(Lone Star Acquisitons, L.L.C.)의 회장(President)인 자이며 동시에, 소외 론스타 펀드(Lone Star Fund)와 그 계열사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여러 비영리법인의 이사(Director) 또는 임원(Officer)인 자입니다.

소외 렌 알렌 주니어(Len W Allen Jr.)는 당시 소외 론스타 어퀴지션 엘엘씨(Lone Star Acquisitons, LLC)의 집행부회장(Executive Vice President)이고, 소외 허드슨 어드바이저스 엘엘씨(Hudson Advisors LLC)의 부회장(Executive Vice President)이었던 자입니다.

PART III			
Item 10. <i>Directors and Executive Officers of the Registrant.</i>			
<u>Directors of the Company.</u>			
Name	Age	Principal Occupation	Director Since
David M. West	46	Mr. West was elected Chairman of the Board, a Director and Interim Chief Executive Officer in March 2001 (he resigned as Interim Chief Executive Officer in June 2001 at the time Mr. Stetson was elected Chief Executive Officer) in connection with the closing of a significant common stock investment by Lone Star Fund III (U.S.), L.P. and its affiliates ("Lone Star Funds") in the Company. Lone Star Funds is one of the largest opportunity funds in the world, with over \$8 billion of equity capital under management. Mr. West is also a member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and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Company. Mr. West is the President of Lone Star U.S. Acquisitions, LLC and, in that capacity, directs all North American origination, underwriting and asset management efforts for Lone Star Funds. Prior to joining Lone Star Funds in 1998, Mr. West was a Senior Vice President with L.J. Melody & Company where he was responsible for originating real estate debt and equity transactions. His professional experience also includes 15 years with General Electric Capital Commercial Real Estate where, as Senior Vice President/Territory Manager, he led the real estate investment group for the Southwest United States. Mr. West is a director or officer of several non-public companies which are owned or controlled by Lone Star Funds or affiliates of Lone Star Funds.	March 20
Len W. Allen, Jr.	39	Mr. Allen is a Director of the Company and a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Since August 2000, Mr. Allen has served as Executive Vice President of Lone Star U.S. Acquisitions LLC where he is responsible for originating investment opportunities in North America for the affiliated funds. From February 1997 until he joined Lone Star Funds, Mr. Allen was Executive Vice President of Hudson Advisors LLC, an affiliate, where he was responsible for managing portfolios of assets located in North America. Mr. Allen's previous experience also includes Lehndorff USA, a diversified real estate company with holdings throughout the	March 20
<유에스알피의 론스타측 이사인 데이비드 웨스트와 렌 알렌 주니어>			

(갑 제22호증의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유에스알피의 서류의 발췌본 중 제42면으로 기재된 페이지 참조).

소외 로버트 지델(Robert Gidel)은 소외 유에스알피의 이사(Director)인자인데, 그는 당시 론스타 펀드의 독립 투자 위원회(Independent Investment Committee)의 독립적 위원(independent member)입니다. 이 독립투자위원회는 론스타펀드의 투자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Robert Gidel	52	Mr. Gidel is a Director of the Company, Chairman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a member of the Nominating and Corporate Governance Committee and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Since 1998, Mr. Gidel has been the Managing Director of Liberty Partners, L.P., a partnership which makes investments in real estate operating companies and partnerships. Since 1966, Mr. Gidel has been the independent member of the Independent Investment Committee of the Loan Star Funds. The investment committee approves, but does not generate, all investments made by the Loan Star Funds. Through April 1998 (when it	March 1
<유에스알피의 론스타측 이사인 로버트 지델>			

(갑 제22호증의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유에스알피의 서류의 발췌본 중 제43면으로 기재된 페이지 하단 참조).

소외 그레고리 스트롱(Gregory I. Strong) 또한 소외 유에스알피의 이사(Director)입니다. 그는 당시 론스타 펀드의 계열사와 허드슨 어드바이저스 엘엘씨(Hudson Advisors LLC)의 부회장(Executive Vice President)인 자입니다.

Gregory I. Strong	47	Mr. Strong is a Director of the Company and a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Mr. Strong serves as Executive Vice President of Hudson Advisors LLC, an affiliate of Lone Star Funds, where he currently oversees the management of portfolios in North America. Mr. Strong began his career at Brazos Asset Management (the predecessor to Hudson Advisors LLC) in 1993 as an asset manager and underwriter of real estate portfolios. In 1995, he was promoted to Director of Underwriting where he served until his next promotion to Portfolio Manager of the European assets under management. Prior to 1993, Mr. Strong worked for other diversified real estate companies including American Real Estate Group, American Residential Properties and the FDIC/FADA.	March
44			

<유에스알피의 론스타측 이사인 그레고리 스트롱>

(갑 제22호증의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유에스알피의 서류의 발췌본 중 제44면으로 기재된 페이지 참조).

라) 소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제가목은 ‘동일인이 다른 주요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외 론스타III는 소외 유에스알피의 최대주주이자 8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4명을 자신의 관계인으로 선임하였으며, 또한 그 이사들은 소외 론스타III의 임원을 겸임하기도 하였으므로 소외 유에스알피는 소외 론스타III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제가목 및 제다목에 따라 기업집단에 속하고, 따라서 소외 유에스알피는 구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 4 제8호에 따라 소외 론스타III과 소외 유에스알피는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 존 피 그레이켄(John P. Grayken)과 피고 론스타등 및 소외 론스타 III가 모두 특수관계인이므로, 소외 유에스알피와 피고 론스타등은 특수관계인입니다.

한편, 소외 유에스알피는 레스토랑 체인이므로 비금융주력자인 것은 명백합니다.

4)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등의 비금융주력자 입증

구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란 (i)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제2조 제1항 제9호 가목)’인 경우와 (ii)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동조 제1항 제9호 나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동일인인 소외 케이씨 홀딩스 에스에이(KC Holdings S.A.) 소외 스타홀딩스(Star Holdings) 소외 스타타워 주식회사와 소외 유에스알피의 자산과 피고 론스타등이 이 사건 신청할 당시 비금융주력자로 신고한 소외 극동건설등의 자산을 모두 합산하면 2조원이 넘게 되어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등은 비금융주력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외 극동건설 주식회사(당시 자산총계 약 766,100백만원)와 소외 스타타워 주식회사(당시 자산총계 614,794백만원) 및 레스토랑 체인인 소외 유에스알피(당시 자산총계 약 681,395백만원)의 자산총계를 합산하면 2,062,289백만원이 되어 2조원을 상회하게 됩니다. 즉, 이 사건 승인 신청 당시 피고 엘에스에프 및 피고 론스타등이 구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나목 소정의 비금융주력자임은 명백합니다.

5) 이 사건의 승인 없는 계약은 무효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승인 당시 피고 론스타등이 다수의 비금융회사를 누락시킨 채 제출한 승인신청서류의 자료에만 근거하여 구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의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은행법 제15조 제3항의 한도초과주식 보유에 대한 승인조항을 근거로 피고 론스타등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구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 초과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비금융주력자인 피고 론스타등에 대한 은행주식 초과보유 승인은 위법한 승인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승인이 없었던 주식 양수도 계약은 무효입니다.

나. ‘투자자 변경’에 기인한 피고 론스타등의 외환은행 주식 양수도계약은 무효

(1) 이 사건의 ‘투자자 변경’ 당시의 은행법

구 은행법은 동일인을 대상으로 주식 보유한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인 단위가 규제 단위인 것으로 동일인, 즉 본인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보유한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변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이 변동되면 동일인이 변동됩니다. 이러한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등이 외환은행의 동일인을 변경할 당시의 구 은행법은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고(제15조 제1항 본문)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대한 예외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당해 금융기관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 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3항).

한편 비금융주력자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고(동법 제16조의2 제1항) 비금융주력자는 ‘동일인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동법 제2조 제1항 제9호 가목)이거나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동조 나목)입니다.

위 규정들을 보면 우리 은행법은 ‘동일인’을 대상으로 하여 동일인의 변경, 즉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때마다 별도로 은행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 받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피고 론스타등의 투자자 변경 신고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변화

피고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Lone Star Partners IV, L.P.)와 피고 론스타 펀드 포(유에스) 엘피(Lone Star Fund IV(U.S.), L.P.), 피고 엘에스에프는 2003. 10. 29.자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관련 변경보고’라는 보고서를 금융위원회를 수신자로, 금융감독원장을 참조로 하여 2003. 10. 30.에 제출하였습니다. (갑 제29호증 동일인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관련 변경보고)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관련 변경보고

2003. 10. 29.

수 신 금융감독위원회
참 조 (은행감독국) 금융감독원장
제 목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관련 변경보고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LSF-KEB Holdings, SCA 등 3 인이 제출한 2003.9.2.자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신청 및 귀 위원회의 2003.9.26.자 승인 공문(제목: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 공문번호: 은행 41231-173)과 관련됩니다.

3. 상기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귀 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중 일부에 변경이 있어서 별첨과 같이 변경보고를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관련 변경 내용 1 부. 끝.

신 청 인 Lone Star Partners IV, L.P.
Lone Star Fund IV (U.S.), L.P.
LSF-KEB Holdings, SCA

변호사 정 계 성
변호사 박 준
변호사 김 도 영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23
(전화 3703-1114)

2003.10.30
047441

<갑 29호증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관련 변경
서류 표지>

이 보고서의 <별첨 6>의 ‘수정된 동일인 현황 및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현황’의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현황을 보면, 피고 론스타 등이 소외 엘에스에프 포 비 코리아 원(LSF IV B Korea I), 소외 엘에스에프 포 비 코리아 투(LSF IV B Korea II), 소외 케이이비 인베스터스 투 엘피(KEB Investors II, L.P.), 소외 케이이비 인베스터스 쓰리 엘피(KEB Investors III, L.P.), 소외 케이이비 인베스터스 포 엘피(KEB Investors IV, L.P.)등 5개의 회사를 새로운 동일인으로 추가하고, 최초 신청 당시의 동일인 목록에서 소외 론스타 펀드 포 버뮤다 엘피(Lone Star Fund IV(Bermuda) L.P.)가 제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투자자 변경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 이후 소외 외환은행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동일인은 2003. 9. 26. 초과보유승인을 위법하게 얻은 과거의 동일인과 다른 동일인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2.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업종	비공용회사 해당여부	자산총액	자산총액	제무건권성 비율
Lone Star Partners IV, L.P.	기타 투자기관	X	39,819	37,679	해당사항 없음
Lone Star Fund IV (U.S.), L.P.	기타 투자기관	X	1,700,207	725,288	해당사항 없음
LSF IVB Korea I, L.P.	기타 투자기관	X	167,938	167,938	해당사항 없음
LSF IVB Korea II, L.P.	기타 투자기관	X	293,021	293,021	해당사항 없음
KEB Investors, L.P.	기타 투자기관	X	118,352	118,352	해당사항 없음
KEB Investors II, L.P.	기타 투자기관	X	55,625	55,625	해당사항 없음
KEB Investors III, L.P.	기타 투자기관	X	54,442	54,442	해당사항 없음
KEB Investors IV, L.P.	기타 투자기관	X	63,910	63,910	해당사항 없음
LSF4 Global Management, Ltd.	기타 투자기관	X	14	14	해당사항 없음
Lone Star Global Holdings, Ltd.	기타 투자기관	X	228,183	203,164	해당사항 없음
KEB Holdings, L.P.	기타 투자기관	X	14	14	해당사항 없음
Lone Star Capital Investments S.ar.L.	기타 투자기관	X	106,825	83,464	해당사항 없음
LSF-KEB Capital Investment, S.ar.L.	기타 투자기관	X	173	173	해당사항 없음
Lone Star Capital Management, SPRL	기타 투자기관	X	111	62	해당사항 없음
LSF-KEB Holdings, SCA	기타 투자기관	X	86	86	해당사항 없음
엘에스에프포 서울 원	기타 투자기관	X	73,801	15,049	해당사항

<갑 29호증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관련 변경서류 별첨61면>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없음
엘에스에프도 서울 투 유동화전문유한회사	기타 투자기관	X	16,504	3,232	해당사항 없음
엘에스에프도 서울 쓰리 유동화전문유한회사	기타 투자기관	X	191,452	16,791	해당사항 없음
제우스유동화전문유한 회사	그외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	X	368,711	27,076	해당사항 없음
테라유동화전문유한회 사	그외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	X	133,324	28,349	해당사항 없음
아폴로유동화전문유한 회사	그외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	X	10,099	1,416	해당사항 없음
아메스유동화전문유한 회사	그외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	X	178,370	11,004	해당사항 없음
극등건설 주식회사	도로건설업	O	706,479	407,837	해당사항 없음
스타리스 주식회사	금융리스업	X	384,746	57,998	24.42% *
극등요업 주식회사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O	41,108	35,721	해당사항 없음
과천산업개발 주식회사	비주거용부동산 관리업	O	13,233	5,661	해당사항 없음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채권추심 신용정보업	O	5,358	3,459	해당사항 없음
계			4,891,906	2,416,824	
비금융회사 소계 (총계에 대한 비율)			766,178 (15.66%)	452,678 (18.73%)	

※ 해외소재 특수관계인의 경우 2003년 10월 29일 기준환율인 1 Euro = 1380.73 원 및
 US\$ 1 = 1183.40 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임. 자산총액 및 자본총액은 원칙적으로
 2003년 6월 30일 기준이나 Lone Star Partners IV, L.P.는 2003년 3월 31일 기준이며,
 KEB Holdings, L.P. 및 LSF-KEB Holdings, SCA는 설립당시 자산총액 및 자본총액이고,
 LSF IVB Korea I, L.P.(2003.10.20 설립), LSF IVB Korea II, L.P. (2003.10.20 설립), KEB
 Investors, L.P. (2003.9.3 설립), **KEB Investors II(2003.9.24 설립)** L.P. KEB Investors III, L.P.

<갑 29호증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관련 변경서류 별첨62면>

(3) ‘투자자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접수 및 승인 부존재

구 은행법은 동일인을 기준으로 하여 금융기관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고 있고, 제한 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구 은행법 제15조 제3항).

그렇다면, 이 ‘투자자 변경’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변동되었고 이에 따라 동일인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인 동일인이 변동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별도의 승인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자 변경보고서는 이러한 승인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에 보고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승인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03. 10. 29. 금융위원회를 수신자로 하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관련 변경보고’에는 2003. 10. 30. 금융감독원의 접수도장 및 당시 팀장 소외 이병화의 서명만 있을 뿐, 금융위원회에 이 서류가 접수 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가 이 사건 ‘투자자 변경’을 인지한 것은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 등이 제출한 신청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금감위 증선위 합동간담회자료인 ‘Lone Star의 한국 외환은행 주식취득계약 변경내용 보고’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인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금융위원회에 최초로 보고된 날은 2003. 11. 21.을 전후한 시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갑 제30호증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자료).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등은 한국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3. 10. 30. 주금을 납입하는 한편, 그 이튿날인 2003. 10. 31. 신주발행의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즉,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등이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동일인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구하지도, 기다리지도 않고 계약을 종결시킨 것인 바, 이는 은행법 제15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16조의2에 반하여 위법무효인 행위입니다.

피고 론스타등이 2003. 9. 2. 제출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서에는 금융감독원의 접수 도장 및 금융위원회의 접수 도장이 모두 날인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2003. 10. 29.자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관련 변경보고’가 과연 수신자인 금융위원회에 접수가 되었는지도 의문일 뿐더러, 나아가 피고 론스타등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는지 여부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갑 제29호증 동일인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관련 변경보고 표지를 보면 금융위원회에 보고 되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른 심사나 승인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변경’에 대한 승인이 없었으므로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등이 소외 외환은행과 체결한 주식인수계약은 확정적 무효입니다.

(4) 소결

은행법상 규제 단위는 동일인이고 동일인에 대하여 승인이 있어야 초과보유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등은 자신들이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동일인을 대상으로 한 승인을 받았어야 주식인수계약이 유효하다 할 것인데, 특수관계인 변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되지도 않고 심사 및 승인도 없었으므로 주식인수계약은 무효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론스타등은 2003. 10. 29. 당초 승인신청 서류에 기재된 특수관계인을 변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일인을 변경하였으나 이 변경된 동일인에 대해서는 새롭게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승인도 없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본 건 주식인수계약이 무효인 점은 더욱 명백합니다.

6. 피고 론스타등 업무집행지시자들과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

가. 무효인 주식 양수도 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피고 론스타등은 구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여서 은행 주식을 초과보유할 수 없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승인 없이 외환은행과의 본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바, 이는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하여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은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무효인 계약입니다.

투자자 변경과 관련하여서도 이 계약은 명백한 무효의 계약입니다. 투자자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등의 동일인이 변경되었으므로 동일인을 기준으로 하여 금융기관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승인이 부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등은 자신의 동일인 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자신의 동일인을 누락시켰습니다. 나아가 피고 엘에스에프는 자신이 사실상의 대주주로 있는 동안 소외 외환은행의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주로 행세하였던 자로 자신이 주주가 될 수 없음을 알았던바, 주주가 아님을 알면서도 그 보유주식을 소외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여 매각차익을 취득하고, 또한 주주로서 소외 외환은행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등은 이처럼 위법하게 주식 매각차익을 취득하고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소외 외환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바, 소외 외환은행에게 그 손해 전부를 마땅히 배상하여야

합니다.

나. 피고 엘에스에프, 피고 론스타등 및 피고 ‘종전 이사들’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업무집행지시자로서 피고 론스타등의 책임

피고 엘에스에프는 벨기에에 설립된 회사인데, 이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실체가 없는 회사입니다. 피고 엘에스에프는 그 종업원이 없는 회사이고, 그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론스타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에스피알엘(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PRL)의 대표이사는 피고 마이클 디 톰슨(Michael D. Thomson)이며 그는 동시에 소외 외환은행의 이사였던 자입니다.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등이 합심하여 소외 외환은행의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안건을 상정하는 등 소외 외환은행을 지배해온 것입니다.

피고 론스타등은 대주주로 이러한 지배적 지위에 기해 이사들을 종용하여 이익배당의 결의를 하게 하였습니다. 즉, 피고 론스타등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책임에 있어서는 소외 외환은행의 이사로 보아 상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피고 론스타등이 종전 이사들을 종용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이에 기한 주주총회에서 피고 엘에스에프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소외 외환은행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피고 종전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종전이사들은 피고 론스타등에 의해 선임된 자들로서 피고 론스타등이 비금융주력자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입니다.

또한 피고 엘에스에프가 비금융주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금을 수령하도록 방치 내지 방조한 것은 명백한 선관주의 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상법 제399조에 의해 연대하여 소외 외환은행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등은 부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 피고 종전이사들을 선임하는 한편, 피고 종전이사들로 하여금 이사회를 장악해온 것입니다.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등은 그들이 장악한 이사회를 통해 위법한 이익배당을 결의하게 하였고 주주총회에서는 피고 엘에스에프가 부당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배당을 받았던바,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등 및 피고 종전이사들은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피고 종전이사들은 피고 론스타등이 비금융주력자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자임에도 그 임무를 해태하여 소외 외환은행에 손해를 가한 자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론스타 등과 피고 종전이사들은 무효인 이익배당에 따라 소외 외환은행이 피고 엘에스에프에 배당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외 외환은행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손해의 산정

(1) 매각차익

(가) 2012. 2. 9. 소외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외의 주식 양도 계약

이후 2012. 1. 27. 금융위원회가 소외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함으로써 피고 엘에스에프는 자신의 보유분을 매각하였습니다. 피고 엘에스에프는 2012. 2. 9. 소외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주당 11,900원에 보유 주식 329,042,672주를 총액 3,915,607,796,8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그 중 소외 외환은행이 피고 론스타 펀드 포(유에스) 엘피 (Lone Star Fund IV(U.S.), L.P.)에게 발행한 신주 268,75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41%)의 매각가액은 3,198,125,000,000원입니다.

(나) 매각차익에 대한 손해액의 산정

그렇다면 피고 엘에스에프는 주식 41%의 매도로 인해 총 3,198,125,000,000원을 취득하였고,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 등이 신주인수시 지급한 금액이 총 1,075,000,000,000원임을 고려하면 총 2,123,125,000,000원의 매각차익을 취득하였습니다.

(2) 부당한 배당금

피고 엘에스에프가 주식 41%에 대해 배당받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결의일	주당배당액(원)	소유주식	배당총액(원)
2007. 3. 29.	1,000	268,750,000	268,750,000,000
2008. 3. 28.	700	268,750,000	188,125,000,000
2009. 3. 31.	125	268,750,000	33,593,750,000
2010. 3. 30.	510	268,750,000	137,062,500,000

2010. 8. 4.	100	268,750,000	26,875,000,000
2010. 11. 9.	135	268,750,000	36,281,250,000
2011. 3. 31.	850	268,750,000	228,437,500,000
2011. 7. 1	1,510	268,750,000	405,812,500,000
배당액 합계			1,324,937,500,000

피고 엘에스에프는 2007. 3. 29. 부터 2011. 7. 1. 까지 총8회에 걸쳐 1,324,937,500,000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습니다.

(3) 소결

그렇다면 매각 차액과 배당액을 합치면 3,448,062,500,000원이므로 이를 외환은행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매각차익인 2,123,125,000,000원에 대하여 2012. 2. 9.부터 위법한 배당액인 268,750,000,000 원에 대하여 2007. 3. 29. 부터, 같은 188,125,000,000 원에 대하여 2008. 3. 28. 부터, 같은 33,593,750,000 원에 대하여 2009. 3. 31. 부터, 같은 137,062,500,000 원에 대하여 2010. 3. 30. 부터, 같은 26,875,000,000 원에 대하여 2010. 8. 4. 부터, 같은 36,281,250,000 원에 대하여 2010. 11. 9. 부터, 같은 228,437,500,000 원에 대하여 2011. 3. 31. 부터, 같은 405,812,500,000 원에 대하여 2011. 7. 1.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결론

따라서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등은 은행법 제23조의5와 상법 제 403조 및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그리고 피고 종전 이사

들은 은행법 제23조5와 상법 제403조 및 상법 제399조에 의하여 각자 3,448,062,500,000원을 소외 외환은행에 반환하고, 매각차익인 2,123,125,000,000원에 대하여 2012. 2. 9. 부터 위법한 배당액인 268,750,000,000 원에 대하여 2007. 3. 29. 부터, 같은 188,125,000,000 원에 대하여 2008. 3. 28. 부터, 같은 33,593,750,000 원에 대하여 2009. 3. 31. 부터, 같은 137,062,500,000 원에 대하여 2010. 3. 30. 부터, 같은 26,875,000,000 원에 대하여 2010. 8. 4. 부터, 같은 36,281,250,000 원에 대하여 2010. 11. 9. 부터, 같은 228,437,500,000원에 대하여 2011. 3. 31. 부터, 같은 405,812,500,000 원에 대하여 2011. 7. 1.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갑 제1호증 | 실질주주증명서 |
| 1. 갑 제2호증 | 소제기청구서 |
| 1. 갑 제3호증 | 외환은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1. 갑 제4호증 | 주식매매계약서(Share Purchase Agreement), |
| 1. 갑 제4호증의2 | 주식매매계약서 발췌번역본 |
| 1. 갑 제5호증 | 주식인수계약서(Share Subscription Agreement), |
| 1. 갑 제5호증의2 | 주식인수계약서 발췌번역본 |
| 1. 갑 제6호증 |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 |
| 1. 갑 제6호증의2 | 주주간계약서 발췌번역본 |
| 1. 갑 제7호증 |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인수계약의 양수도에 관한 계약
(Agreement Regarding Assignment And Assumption of Share
Purchase Agreement And Share Subscription Agreement) |
| 1. 갑 제7호증의 2 |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인수계약의 양수도에 관한 계약 |

발췌번역본

1. 갑 제8호증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서
1. 갑 제9호증 Lone Star에 대한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
1. 갑 제10호증 론스타투자구조도 텍사스 주 정부자료 캡처화면
1. 갑 제11호증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 설립서류,
1. 갑 제12호증 론스타 펀드 포(유에스) 엘피 설립서류
1. 갑 제13호증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포 엘티디 설립서류
1. 갑 제13호증의2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포 엘티디 등기서류
1. 갑 제14호증 외환은행 대주주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갑 제15호증 영업양도계약서
1. 갑 제16호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보고
1. 갑 제17호증 브라조스 어드바이저스 어소시에이트 엘피 설립증빙서
1. 갑 제17호증의2 브라조스 어드바이저스 어소시에이트 등기경정서
1. 갑 제17호증의3 허드슨 어드바이저스 어소시에이트 상호경정서류
1. 갑 제18호증 브라조스 어드바이저스 엘엘씨 설립서류
1. 갑 제18호증의2 허드슨 어드바이저스 엘엘씨로의 상호경정서류갑
1. 갑 제19호증 론스타 매니지먼트 코 쓰리 세금신고서류
1. 갑 제20호증 론스타 파트너스 쓰리 사업신고서류
1. 갑 제21호증 론스타 펀드 쓰리(유에스) 엘피 사업신고서류).
1. 갑 제22호증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유에스알피의 2001. 8. 13. 신고서류
1. 갑 제22호증의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유에스알피의 서류의 발췌본
1. 갑 제22호증의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유에스알피의 서류의 발췌본
1. 갑 제23호증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서
1. 갑 제24호증 결정문(2012카합496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1. 갑 제25호증 주식회사 스타타워 감사보고서

- | | |
|------------|---|
| 1. 갑 제26호증 |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7650) |
| 1. 갑 제27호증 | (주)한국의환은행 등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보고 |
| 1. 갑 제28호증 | 2003. 6. 30. 현재 유에스알피 대차대조표 |
| 1. 갑 제29호증 | 동일인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관련 변경보고 |
| 1. 갑 제30호증 | 금감위·증권위 합동간담회자료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각 입증방법 | 각 1부 |
| 1. 소장 부분 | 12부 |
| 1. 소송위임장 | 1부 |
| 1. 담당변호사지정서 | 1부 |
| 1. 납부서 | 1부 |

2012. 7. 24.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한결

담당변호사 김 성 진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